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30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

제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4가합20421 소유권이전등기
원 고	[redacted]시
피 고	주식회사 [redacted]
변 론 종 결	2015. 6. 4.
판 결 선 고	2015. 8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0. 7. 1.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30

가. 피고는 [redacted]군 [redacted]면 [redacted]리 [redacted]번지 외 4필지 상에 민영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79. 3. 27.경 원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(1981. 4. 20.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주촉법'이라 한다) 제33조에 따른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 한다)을 승인받았고, 1980. 7. 1.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에 도로를 설치하였고,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.

다. 한편, 피고는 1978. 12. 31.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, 1990. 7. 31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 내지 6, 갑 제2호증의 1 내지 6, 갑 제3호증의 1, 2, 3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은 "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보며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."고 규정하여, "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."는 구 도시계획법(1991. 12. 14.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83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30

조 제2항 전단 부분을 구 주촉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준용되도록 하고 있다. 위 준용 규정의 입법 목적은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로, 공원, 녹지,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,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면서 널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.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의 공공시설은 직접적으로 널리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·관리되는 도로, 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공용 시설을 의미한다(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63874 판결 등 참조). 또한,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(준공검사)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(대법원 1999. 4. 15.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따라 살펴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사업 중 공공시설인 도로를 구성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위 준공검사일인 1980. 7. 1.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무상귀속 되었다고 할 것이다.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8. 12.경, 1990. 7. 31.경부터 또는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토지매수청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30

구를 요청한 2000. 8. 1.부터 각 10년 이상 평온 · 공연하게 선의 · 무과실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,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.

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(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),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한다. 살피건대,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, 설령 피고의 점유를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.

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동연

판사 김주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30

판사 박노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8-30

별지

부동산 목록

1. 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 도로 4948㎡
2. 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 도로 236㎡
3. 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도로 233㎡
4. 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도로 285㎡
5. 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 도로 217㎡
6. [redacted]시 [redacted]동 [redacted] 도로 273㎡. 끝.